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안(변경)

의안 번호	427
----------	-----

발의연월일 : 2018년 3월 26일
발 의 자 : 박찬원 의원
찬 성 자 : 함명섭, 박종욱
장문혁, 이범연
임영순 의원

1. 제안이유

- 제23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7. 10. 16.)에서 선정된 평창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제6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중 사퇴자가 발생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선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제6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12명 중 사퇴서를 제출한 위원 1명(미탄면 회동1리 김순배)에 대하여 변경 선정

구 분	성 명	주 소	비 고
지역주민	이태호	미탄면 다래너미길 13-6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생략
-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관계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지원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①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2.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5.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를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지원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제17조제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2. 제20조에 따른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3. 제22조제5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4. 제25조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④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8조 각 호에 따른 전문연구기관 중에서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할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그 선정 결과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6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한 후 그 실시 결과를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에 통지하고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운영) ①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또는 인접지역 군의원으로부터 의회에서 선정한 의원 1명
2.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군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12명
3. 주민대표가 선정한 전문가(전문대학이상 환경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 또는 국·공립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 2명

4. 삭제 <2006.12.22>

②군수는 다음사항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 법 제22조 및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
2.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